의안번호	2200346
의 뢰 인	박해철 의원
회 답 일	2024.8.29.
추계번호	24B06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3	안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하 "육아기"라 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함(제4항)	의무규정
6	안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사업주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휴가에 대한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음 –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연장 및 난임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9호)을 통하여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
2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 미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기한이 연장될 경우 제도 사용의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급 기간의 실질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조항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확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는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9호)을 통하여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
3	안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 미대상 – 개정안의 시행으로 난임치료휴가의 사용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은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참고로, 난임휴가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9호)을 통하여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
4	안 제19조(육아휴직)	—	• 미대상 – 육아휴직 사용 연령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조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지원 내용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6	안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 미대상 –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사용 연령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육아기 재택근무 등에 대한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2. 상세 사유

❑ (안 제19조의2제1항) 개정조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는 내용임

○ 안 제19조의2제1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평균 사용기간은 2023년 기준 9.3개월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유인이 있음

[표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평균 사용기간

(단위: 개월)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5	9.2	9.4	9.4	9.3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나 다음의 이유로 추계하기 곤란

○ 첫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령기 아동(9~12세)을 키우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학령기 아동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요를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함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의 사용기간 및 수급자 수 등에 대한 정보는 영유아를 키우는 근로자에 대한 자료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모집단의 정보를 왜곡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대상자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연령 변경에 따른 “추가 사용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2019년 8월 27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전까지 육아휴직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9년 10월 1일(개정법 시행일)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2019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육아휴직과 별개로 독립된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 참고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 전망치에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대상자 수는 최근(2019~2023년)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

[부표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수: 2019~2023년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660	14,698	16,689	19,466	23,188
	남자	742	1,639	1,632	2,001	2,415
	여자	4,918	13,059	15,057	17,465	20,773

자료: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수는 2019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육아휴직과 별개로 독립된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4년간(2020~2023년) 연평균 증가율(16.4%)을 적용하여 산출

[부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전망Ⅰ: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6,582	42,586	49,576	57,713	67,185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본 추계서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잠재적 수요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4년간(2020~2023년) 사용행태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본 추계서는 사용대상 확대라는 제도변화에 따라 증가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의 2024년 예산 산출 근거를 준용하여 2023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사용자 수에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기간(9년) 대비 개정안에 따른 증가 기간(4년)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부표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전망Ⅱ: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수급자 수(기준선, A)	36,582	42,586	49,576	57,713	67,185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수급자 수 (B=A×4/9)	16,259	18,927	22,034	25,650	29,860

주: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지원단가는 2023년 기준 월평균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1인당 지원단가) 연간 재정소요액을 지급인원으로 나누고, 이를 평균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산출

  ※ 집행액: 1,303억원(2023년 기준)

  ※ 지급인원: 23,188명(2023년 기준)

  ※ 지급기간: 9.3개월(2023년 기준)

- 지원단가는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특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1인당 지원단가가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부표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집행 현황: 2019~2023년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11	550	897	1,073	1,303

주: 집행액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대상 확대에 따른 실제 사용기간은 현재의 사용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부표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수급자 수(A, 명)	16,259	18,927	22,034	25,650	29,860	—	—
월평균 지원단가(B, 백만원)	0.66	0.69	0.71	0.73	0.75	—	—
지급기간(C, 개월)	9.3	9.3	9.3	9.3	9.3	—	—
추가재정소요 (D=A×B×C, 억원)	1,004	1,206	1,449	1,741	2,091	7,491	1,498

주: 1. 위 도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화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로 기준선(base-line)이 차감된 추가재정소요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장래에 발생할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4. 추계기간 동안 임금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러나 이러한 추가재정소요는 비교적 최근 도입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특성상 학령기 아동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대상 확대가 기존 수급자 수 및 수급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행태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